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89호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에 대한 정의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규정 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을 알아볼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록 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바.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사.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용하여 주차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coolai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은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군수·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원인

- 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안내판 설치, 임산부 주차면 도색, 임산부 주차발급증 제작 등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으로 미첨부.

4. 작 성 자

- 산업위원회 구 재 용 의원